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합의뢰기관”을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으로, “결합의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결합의뢰기관간”을 “결합의뢰기관 및 정보집합물 보유기관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4조의2제3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결합키 추출시 각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은 결합키만 데이터전문기관(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달할 것

2.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 및 정보집합물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추출 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추출하되,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 추출된 결합키를 통해 타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 보유한 결합키를 알 수 없도록 결합되지 않는 결합키(해당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 보유한 결합키로 한정한다)도 함께 추출할 것

3. 데이터전문기관이 추출한 결합키를 각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에 전달할 때, 각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한 결합키만을 전달할 것

4. 데이터전문기관과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결합키 전달시 해당 결합키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5. 데이터전문기관은 각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에 추출한 결합키를 전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합키를 삭제할 것

제15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결합대상기관명”을 “정보집합물 보유기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데이터전문기관(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영 제14조의2제7항”을 “영 제14조의2제8항”으로 한다.

1. 결합목적, 결합한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관련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영 제14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다른 데이터전문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추가 집중관리 · 활용 대상정보) 영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집중관리 · 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는 별표 6의 정보로 영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제28조의3제2항 중 “재정능력”을 “재정능력”과 영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일 9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영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 조건부과, 예비지정 등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지정”으로 본다.

별표 2의2, 별표 2의4를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3 Ⅱ 제3호 중 “영 제2조 제2항”을 “영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Ⅲ 제3호 중 “개인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1의 가목”을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

호가목 중 “1의 가목”을 “제1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24조의2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을 “(제24조의2,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1)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 중 “마을기업의 인증”을 “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의 인증”으로 하고, “공공단체 보유정보 등록 시는”을 “공공단체 보유정보 등록 시기는”으로 한다.

마. 기타 금융거래 관련				
기타 금융거래 현황(거래 기관명, 종류 ¹⁾ 등 포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 정보 보유기관	해당 개인	등록사유발생일 부터 7영업일 이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주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범위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별표 7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것”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순자산”을 “영 제22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거나, 순자산”으로 한다.

별표 8 II 제1항 본문 중 “별도 내부관리계획”을 “내부관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법 제36조제2제1항”을 “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날로 본다.

[별지 1]
[별표 2의2]

대주주의 요건

(제7조 및 제11조제3항 관련)

1. 대주주가 영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 제2호나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 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

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2) 최근 5년간 과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 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2호 관련)

가.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3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2) 제1호다목(2)에서 정하는 사실

라. 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 (1) 유상증자
-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 (3) 내부유보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4호 관련)

가.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 (2) 최근 3년간 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4) 제1호다목(2)에서 정하는 사실

나. 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5호 관련)

가.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1의2 제6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 가목,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5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특례

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 요건을 다

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해당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 (2) 해당인이 기금등인 경우: 제2호의 요건
- (3) 해당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다목의 요건
- (4) 해당인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가목의 요건
- (5) 해당인이 외국 법인인 경우: 제5호가목의 요건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 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없다)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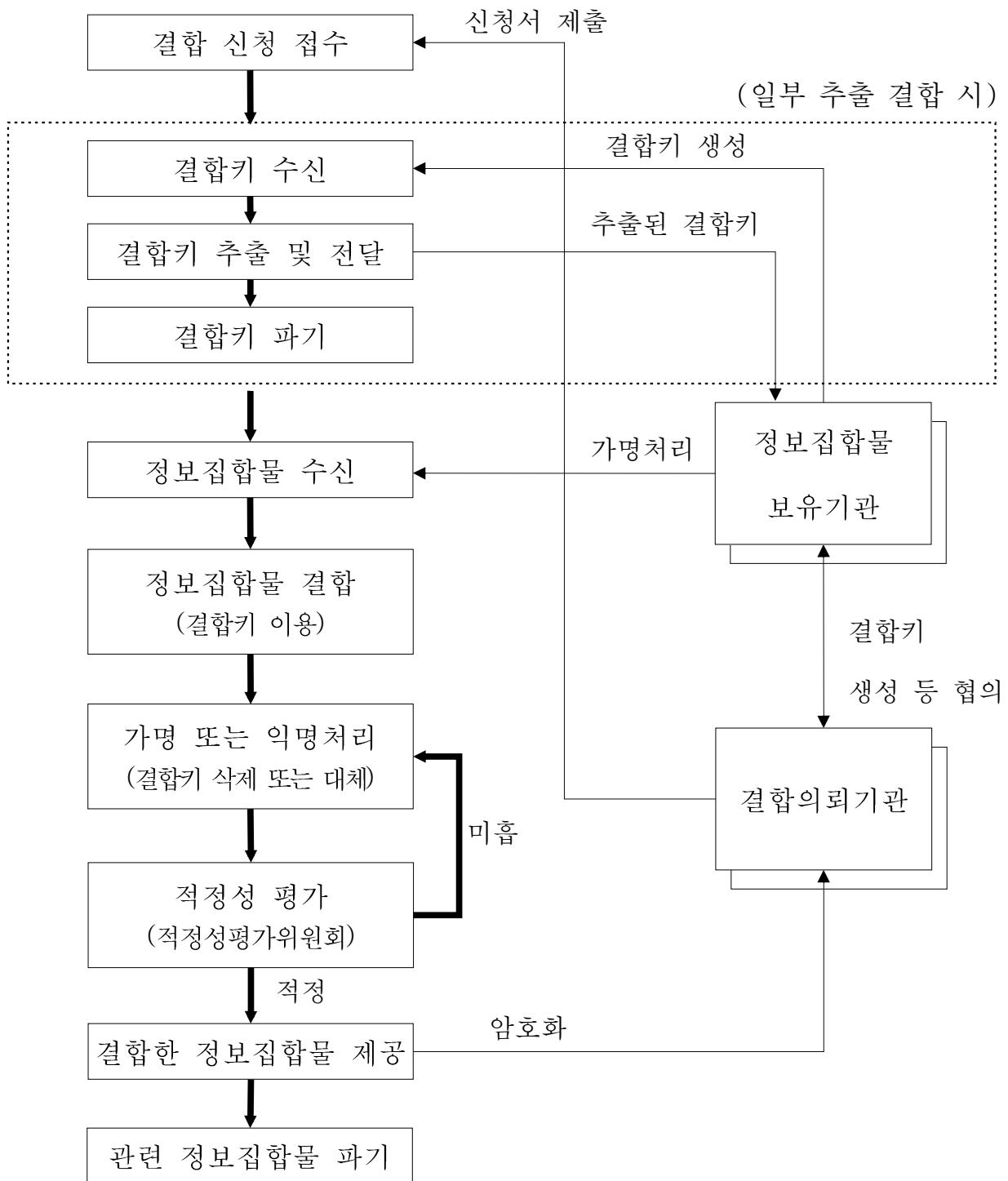
다.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2]

[별표 2의4]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절차 (제15조의2제6항 관련)

<데이터전문기관>

<신청 기관>



[별지 3]

[별지 제8호의2 서식]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제15조의2제1항 관련)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합의뢰 기관명	기관명		담당자(성명,직함)
	담당부서		전화번호
	소재지		이메일 주소
정보집합물 보유기관명 (복수기재 가능)	기관명		
	담당부서		
	소재지		
결합목적			
정보집합물 주요내용 요약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이용목적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 포함) <input type="checkbox"/>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기록보존 등
		결합키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대체
결합 데이터 제공형태	<input type="checkbox"/> 익명정보		
기타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명)장 귀하

첨부서류	정보집합물 명세서,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의 정보집합물 제공 사실 확인서류 등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생 략) ② 영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u>결합의뢰기관</u>(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u>결합의뢰기관</u>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영 제1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합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생성하여야 한다.</p> <p>1. <u>결합의뢰기관간</u> 외에는 결합 키 생성방식을 공개하지 아니 할 것 2. (생 략)</p> <p><u><신 설></u></p>	<p>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정보집합물 보유기관</u>----- ----- <u>정보집합물</u> <u>보유기관을</u>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1. <u>결합의뢰기관 및 정보집합물 보유기관간</u> ----- ----- 2. (현행과 같음) <u>③ 영 제14조의2제3항제2호의 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는 방법을 말한다.</u> <u>1. 결합키 추출시 각 정보집합 물 보유기관은 결합키만 데이 터전문기관(법 제26조의4제1 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달할 것</u></p>

2.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 및 정보집합물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추출 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추출하되,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 추출된 결합키를 통해 타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 보유한 결합키를 알 수 없도록 결합되지 않는 결합키(해당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 보유한 결합키로 한정한다)도 함께 추출할 것

3. 데이터전문기관이 추출한 결합키를 각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에 전달할 때, 각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한 결합키만을 전달할 것

4. 데이터전문기관과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결합키 전달시 해당 결합키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5. 데이터전문기관은 각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에 추출한 결합키를 전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합키를 삭제할 것

<신 설>

⑥ 영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제공·처리·보관의 절차는 별표 2의4와 같다.

⑦ (생 약)

<신 설>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생 약)

② 영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설비, 인력·조직 및 재정능력”은 별표 7과 같다.

③ ~ ⑦ (생 약)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영 제14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다른 테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⑦ 영 제14조의2제8항-----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6조의2(추가 집중관리·활용 대상정보) 영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집중관리·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는 별표 6의 정보로 영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재정능력”과 영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에 대해서는 제5조제5
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⑧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의 유효
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
정기간 만료일 9개월 전부터 6
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영 제22조의4제1
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 조건부과, 예비
지정 등에 대해서는 제5조제5
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지정”으로 본다.